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 기술교육의 의무편성 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련 국가자격종목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범위를 확대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다.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제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인의 스마트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승급)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5시간 이상)을 의무 편성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조제2항)

경력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마. 교육·훈련분야 변경 신청 검토 근거 명확화(안 제30조제8항, 별지 제15호의 2서식)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분야 변경은 신청기관의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하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서식 개선

바.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의3제3항)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사. 교육관리기관 위탁업무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의5제3항)

교육관리기관의 교육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원격교육 형식 확대 등(안 제40조제1항, 제4항~제5항)

강의 동영상 시청형 원격교육 형식 이외에 화상강의 플랫폼(Zoom, 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 강의형 원격교육 실시 근거 및 원격교육의 품질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이 최소 1년 단위로 점검 및 보완한 교육내용을 교육관리기관이 확인하고 보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재)건설산업정보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로 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사병**”을 “**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병학교장·시설실장**”을 “**각 군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모바일 발급에 한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을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건설기술인(근무처 포함)에게 자료를 요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을 “그 처리결과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분야”를 “분야 변경 신청 받은 경우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승인한”을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로 한다.

- ③ 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통한**”을 “**통한 다음 각 호의**”로, “**있으며,**”를 “**있으며,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의 동영상 시청 방식: 사전에 제작된 교육 동영상을 개인 단말기 등을 통해 시청
2. 실시간 생방송 강의 방식: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강의

제4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피교육자가**”를 “**교육생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에 대한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원격교육을**”을 “**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교육과정**”을 “**원격교육 점검·보완 내용 검토결과, 교육과정**”으로 한다.

- ④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

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승급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전문분야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등급 무관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 1. 원격교육·훈련내용의 세부기준란 제5호 중 “제4호”를 “교육기관은 제4호”로, “동영상은”을 “동영상을”로, “있다”를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교육기관, 임대교육과정(과목), 임대기간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종류 및 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배관		배관	배관
				*지게차	지게차운전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금형				생산자동화	
	금형제작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관급제관		관급제관	관급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기응용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도화
	상하수도				
				*석공	석공
	수자원개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만및해안					
				거푸집	
			방수	방수	

				<삭제>	석공예
				*포장	*포장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건축	건축구조				거푸집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비계
				*석공	석공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목재창호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건축사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광업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시추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도시·교통	교통		교통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원에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업종묘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화공안전				
			방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축로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산업안전지도사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수질관리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건설 지원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	섬유	화학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기계제도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지도제작산업기사, 온수온돌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기계분야), 정밀측정산업기사(기계분야)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	1992.03.01

상·자기,침투탐상·누설탐상)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 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 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 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 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 표 2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다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하는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는 온수온돌로 구분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text{역량지수} = \text{자격지수}(40\text{점 이내}) + \text{학력지수}(20\text{점 이내}) + \text{경력지수}(40\text{점 이내}) + \text{교육지수}(5\text{점 이내}) - \text{행정처분}(3\text{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 <u>산업안전지도사</u>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0 ~ 40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비 고

-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 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 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를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

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비 고

-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 2) 기본교육의 교육지수는 모든 건설기술 업무(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직무분야에 산정하며, 전문교육의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해 산정한다.
-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 4)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관련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

		<p>하는 업무</p> <p>※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p>
	3. 감정및평가	<p>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p>
설계· 견적	4. 설계	<p>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p>
	5. 견적	<p>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p>
시공 관리	6. 시공	<p>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p>
	7. 품질관리	<p>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p>
	8. 안전관리	<p>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p>
	9. 환경관리	<p>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p>
	10. 화약관리	<p>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p>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 점검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p>
	12. 유지보수및 보강	<p>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p>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 리(설계용 역)	<p>「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p>
	14. 감리(건축 법)	<p>「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p>
	15. 감리(주택 법)	<p>「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p>

		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p>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p>
	17. 건설사업관리(*)	<p>「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p>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p>가. 발주청(인·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u>인·허가, 예산운영 등</u>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교육·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p>
	22.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u>업무(실제 업무명으로 기재)</u>

비고

스마트건설기술(법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건설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경우 건설 관련 업무에 관련 기술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작성 예) 설계(BIM), 설계(3D), 설계(AI), 측량및지적(드론), 연구(빅데이터), 시공(BIM), 시공(BIM, 드론) 등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관련 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

		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감리 (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감리 (주택법)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총 경력이 4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

		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 관리 (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 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 관리 (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 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

		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로	1. 토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도	3. 석공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장
5. 공항	5. 조적
6. 댐	6. 비계·구조물해체
7. 간척·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하수도설비
13. 지하철	13. 보링·그라우팅
14. 터널	14. 철도·궤도
15. 발전소	15. 포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수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전	25. 승강기설치
26. 변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배관		배관	배관	
					보일러 (2014.5.22이전 신고자격에 한함)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 <삭제>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관급제관		관급제관	관급제관	관급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굴삭기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천공기운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일반기계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연삭	
	금형	금형제작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건축전기 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발송배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산업계측 제어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기기
토목	토질· 지질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 응용지질	토목	
	토목구조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 및 해안	항만및해안		토목	토목	
	도로 및 공항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	
	철도· 삭도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토목	토목	
	수자원 개발	수자원개발				
				토목	토목	
	상하수도	상하수도		토목	토목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농어업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석공	
				포장	포장	
				방수	방수	
토목품질 관리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항공사진	항공사진	

					지도제작	지도제작	
					도화	도화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측량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공사진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도제작	
				도화	도화	도화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도장
					도배	도배	도배
						미장	미장
					방수	방수	방수
					비계	비계	비계
					석공	석공	석공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유리시공
						조적	조적
					철근	철근	철근
					타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	건축	건축	
			금속도장		목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금속도장		
실내건축	목공예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계획·설계	건축사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시추	

도시 ·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시공 관리	조경 종자		조경 종자	조경 종자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방재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산업안전지도사				
					축로	
소방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비파괴 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자연 환경	<삭 제>		<삭 제>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 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해양	해양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해양조사			
건설 지원	건설 마케팅	화공		화공	화공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설 정보 처리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선로
건설 금융·재무 건설 기획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제27조 관련)

직무분야	근거 법령	비고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중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 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 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나
목1)가) 및 다)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3호 가목4)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목 1) 및 3)의 전문교육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
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
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
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1)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
시간으로 한다.
5.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
리기관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0] 전문교육의 종류(제24조 관련)

1. 이수시기별 종류

구분	내용
가. 최초교육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중 해당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7시간 이상 포함한다.
나. 계속교육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
다. 승급교육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u>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5시간 이상 포함한다.</u>

2. 교육내용별 종류

가.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구분	내용
1)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교육 예시) BIM, 드론, AI,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공사용 로봇, IoT 및 센서, 모듈러 공법,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건설 장비 등
2)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해외사업 전반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 예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PPP 이론과 사례, 해외건설 공정관리 사례, 타당성조사 등

나.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구분	내용
1)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	건설기술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당)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교육
2) 직무분야 교육	토목, 건축 등 해당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별로 편성하는 교육

3) 전문분야 교육	설계·시공 등 분야에서 도로 및 공항, 건축시공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건설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에 대해 일반수준(중·고급 과정) 및 심화수준(특급 과정)으로 편성하는 교육
---------------	---

다. 체험형 안전교육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재해체험 중심의 교육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생년월일	
발급	경력증명서 [] 일반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보유증명서 [] 일반 [] 시설공사적격심사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찰내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인

○○○○○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참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훈련기관 구분 [] 종합 [] 전문	훈련분야
	담당자	연락처
	E-Mail(Mobile)	

현행	훈련기관 구분 [] 종합 [] 전문
	교육대상 [] 설계·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훈련분야
	교육권역

변경 신청	훈련기관 구분 [] 종합 [] 전문
	교육대상 [] 설계·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훈련분야
	교육권역
	변경사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 ⑤ (생략)</p> <p>⑥ 건설기술인이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병 가.·나. (생략)</p> <p>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 교장·시설실장 또는 공병·시설·측량·측지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p> <p>⑦ (생략)</p> <p>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p>	<p>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 ----- -----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1. 병 가.·나. (현행과 같음)</p> <p>2. ----- 각 군 공병실장 ----- -----</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p>

설기술인과 용역을 발주한 발주
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고,
확인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
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 ⑪ (생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수탁
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제10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생략)

<신설>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7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

-----.

1. 2. (현행과 같음)

3.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
설기술경력증 발급(모바일 발
급에 한함)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포스
티유 확인서는 「행정사법」 제
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
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

②·③ (생략)

제13조(신고자료의 확인) ①·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경정의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생략)

② 건설기술인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

확인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3조(신고자료의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건설산업정보원에
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건
설기술인(근무처 포함)에게 자
료를 요청-----.

제15조(경정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처리결과를 -----

-----.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벌점-----

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건설기술인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 **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4절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관리

제19조(**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인 현황을 관리

-----.

③ -----

----- **벌점**
-----.

④ -----

----- **벌점**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절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제19조(**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① -----
----- **건설엔지니어링**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인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또는 변경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0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⑦ (생략)

⑧ 교육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 분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③ ----- 제5항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분야 변경 신청 받은 경우 교육실적, 교육수요,

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 고
시한다.

제30조의3(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①·② (생략)

<신설>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
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
업무)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0조(원격교육) ① 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
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

제30조의3(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
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
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 -----
-----.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
른 위탁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
우 교육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0조(원격교육) ① -----

---- 통한 다음 각 호의 -----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⑥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원격교육 승인, 교육·훈련결과 및 교육과정 승인을 취소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④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⑧ -----
제7항-----
----- 원격교육 점검·보완 내용 검토결과, 교육과정 -----.

제46조(재검토기한) -----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 -----

다.

ㄱ.